

제 호

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소재지:

4. 전문분야:

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립 청 장

직인